

※ 입주자격 및 청약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및 제일풍경채 디오션 홈페이지(http://www.yj-jeil.co.kr/)의 입주자모집공고 전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도시건축과 - 17815호(2022.10.0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국제도시 A26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최고 25층 7개동 총 670세대
[특별공급 421세대(일반기관추천) 53세대, 경제자유구역 67세대, 다자녀가구 64세대, 신혼부부 108세대, 노부모부양 21세대, 생애최초 10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5년 0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자본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경제자유 구역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2000648	01	084.9595A	84A	84.9595	26.1890	111,1485	47,5417	158.6902	59,1522	119	14	12	12	24	4	24	90	29	5			
		02	084.9712B	84B	84.9712	25.8040	110,7752	47,5482	158.3234	59,1604	271	25	27	26	54	8	54	194	77	11			
		03	084.9650C	84C	84.9650	26.3739	111,3389	47,5448	158.8837	59,1561	148	14	15	14	30	4	30	107	41	6			
		04	110.9850	110	110.9850	32.3590	143,3440	62,1051	205.4491	77,2722	90	-	9	8	-	3	-	20	70	6			
		05	116.9850	116	116.9850	33.5776	150,5626	65,4626	216.0252	81,4497	42	-	4	4	-	2	-	10	32	-			
		합 계											670	53	67	64	108	21	108	421	249	28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 형	공급 세대	층	세 대 수	분양가격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차 (500만원)	2차 (10%완납)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입주 지정일
								계약식	30일 이내							
84A	101동 1호.5호 107동 1호.5호	2층	4	163,625,000	261,375,000	-	425,000,000	5,000,000	37,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127,500,000
	101동 1호.5호 106동 1호 107동 1호.5호	3~4층	10	172,865,000	276,135,000	-	449,000,000	5,000,000	39,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134,700,000
		5~9층	25	178,255,000	284,745,000	-	463,000,000	5,000,000	41,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138,900,000
		10층 이상	80	182,105,000	290,895,000	-	473,000,000	5,000,000	42,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141,900,000
84B	102동 3호 106동 3호	1층	2	157,080,000	250,920,000	-	408,000,000	5,000,000	35,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122,400,000
	101동 2호 102동 3호 106동 3호 107동 2호	2층	4	162,085,000	258,915,000	-	421,000,000	5,000,000	37,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126,300,000
	101동 2호 102동 1호.3호 106동 3호 107동 2호	3~4층	10	171,325,000	273,675,000	-	445,000,000	5,000,000	39,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133,500,000
		5~9층	25	176,715,000	282,285,000	-	459,000,000	5,000,000	40,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137,700,000
		10층 이상	80	180,565,000	288,435,000	-	469,000,000	5,000,000	41,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140,700,000
		1층	6	157,080,000	250,920,000	-	408,000,000	5,000,000	35,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122,400,000
		2층	6	162,085,000	258,915,000	-	421,000,000	5,000,000	37,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42,100,000	126,300,000
	103동 1호.2호 104동 1호.2호 105동 1호.2호	3~4층	12	172,480,000	275,520,000	-	448,000,000	5,000,000	39,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134,400,000
		5~9층	30	182,490,000	291,510,000	-	474,000,000	5,000,000	42,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142,200,000
		10층 이상	96	189,420,000	302,580,000	-	492,000,000	5,000,000	44,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147,600,000
84C	102동 2호.5호 106동 2호.5호	1층	4	154,770,000	247,230,000	-	402,000,000	5,000,000	35,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120,600,000
	101동 3호 102동 2호.5호 106동 2호.5호 107동 3호	2층	6	159,775,000	255,225,000	-	415,000,000	5,000,000	36,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124,500,000
		3~4층	12	169,400,000	270,600,000	-	440,000,000	5,000,000	39,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132,000,000
		5~9층	30	174,790,000	279,210,000	-	454,000,000	5,000,000	40,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136,200,000
110	103동 3호 104동 3호 105동 3호	1층	3	197,163,300	314,397,000	31,439,700	543,000,000	5,000,000	49,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162,900,000
		2층	3	203,336,000	324,240,000	32,424,000	560,000,000	5,000,000	51,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168,000,000
	103동 3호.5호 104동 3호.5호 105동 3호.5호	3~4층	12	216,044,500	344,505,000	34,450,500	595,000,000	5,000,000	54,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178,500,000
		5~9층	18	228,026,800	363,612,000	36,361,200	628,000,000	5,000,000	57,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188,400,000
116	103동 3호 104동 3호 105동 3호	10층 이상	54	237,104,300	378,087,000	37,808,700	653,000,000	5,000,000	60,30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195,900,000
		5~8층	12	237,104,300	378,087,000	37,808,700	653,000,000	5,000,000	60,30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195,900,000
116	103동 3호 104동 3호 105동 3호	11층 이상	30	246,544,900	393,141,000	39,314,100	679,000,000	5,000,000	62,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203,700,000

2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정	10월 17일(월)	10월 18일(화)	10월 19일(수)	10월 25일(화)	11월 07일(월) ~ 11월 09일(수)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초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 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당사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74-1)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당일 시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3 특별공급 신청자격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53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 추천기관 -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처청 대부팀 - 장애인 :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복지지원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북한이탈주민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67세대
 - 대상자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외국인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말함)으로서 특별공급 해당 기관장이 선정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2제5호 및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중상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자.
 1. 해당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의 종사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
 -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
 -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종사자.
 - 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 종사자.
 - ②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세부운영 기준」 제3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기업의 본사 또는 지사의 주소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의 당해지구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감면 특례를 적용받는 기업 또는 당해지구에 외국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당해지구 안에 연구소만 소재하는 경우는 제외)
 - 나. 「종사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로서 1년 이상을 당해기업에 종사한 근로자를 말한다.
 - 다. 「약국」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을 말한다.
 - 라. 「의료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 마. 「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4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처족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재정양육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생청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자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108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처족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재정양육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처지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1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받은 세대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에 한함)
 -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처족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